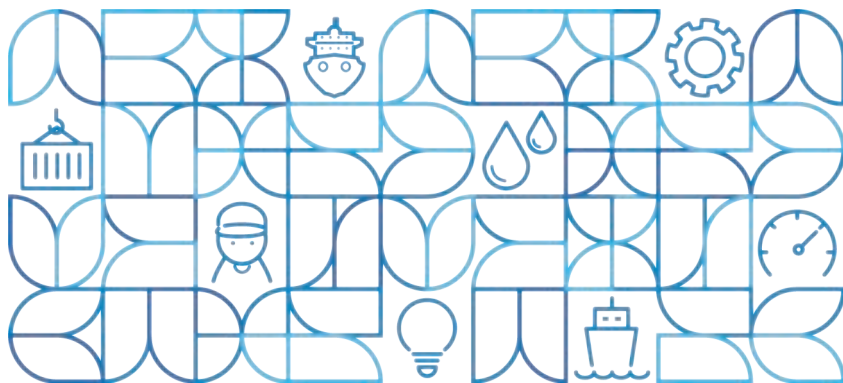




2023 울산항 인센티브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종합안내서



○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동북아에너지 물류허브 조성 및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액체화물 취급화주 유치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화주
 - 울산항이 하역항으로 명기된 관련 증빙서류 상 수하인
 - 최초입항일 기준 과거 2년간 울산항을 통해 해당 화물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자
 - 신규화중 수입을 위해 울산항 내 상업용 탱크터미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급요건

- 대상화종 : 해양수산부 화물분류체계 기준 '액체화물'

품목	HS CODE	최저물량	하역방식	포장방식
원유(역청유), 석유	2709	5천M/T	송유관	벌크 (비컨)
석유정제품	2710,2712,2713	1만M/T	송유관	
석유가스류	2705,2711	5천M/T	송유관	
화학공업 생산품	28,29,30,32,33,34,35,36,37,38	5천M/T	송유관/기계/일반	
동식물성 유지류	15	5천M/T	송유관/기계/일반	

※ 최저물량 : Port-MIS에 신고한 신규 화종의 양하화물톤(항차당)기준으로, 필요 시 수입증빙서류와 상호검증 실시. 단위는 중량톤인 Metric Ton(유사단위or환산) 적용

인센티브
유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감면항목 :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료

지급항목

- 지급항목 : 화물수입 시 화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구분	선박료(외항선限)			화물료 (화물입항료)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자사선·나용선	○	○	○	○
정기용선	○	○	○	○
항해용선	X	X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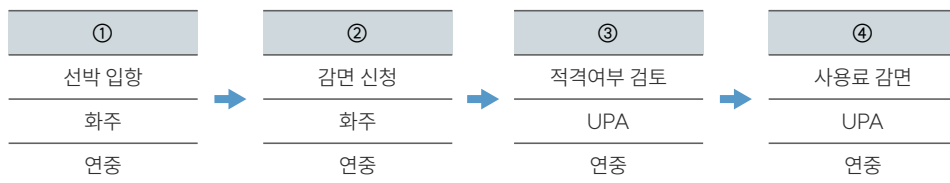
※ 단, 해당 선박 내 신규 화물과 기존 취급화물(또는 통과화물)이 혼재된 경우 선박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신규 화물에 해당하는 화물료만 면제됨

- 지급기간 : 최초 입항일로부터 3년

제출서류

- 울산항 수입 증빙이 가능한 운송·상업서류 사본(수하인 명시)
 - 선하증권(B/L), Sea WayBill,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등
- 탱크터미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규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서류 사본
- 기타 공사에서 인센티브 제공 적격 여부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시행기간

- 2023. 2. 23. ~ 2025. 12. 31. (3년) / 선박입항일 기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5401(화물료)

기타사항

- 화주 명의로 Port-MIS 화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증빙서류와 상호검증
- 인센티브 인정 대상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 정일스톨트해운(주), 한국보팩터미널(주), 현대오일터미널(주),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주), 태영인더스트리(주), KPX글로벌(주), 울산에너지터미널(주), 온산탱크터미널(주), KDTT(주), 효성화학(주)
- 기존 수입화주의 경우, 과거 2년간 취급이력이 없는 신규 화종을 수입하기 위해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이용(신규, 추가 등)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혜 가능

신규화종 대상여부 판단기준

품목	원유, 석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류	화학공업생산물	동식물성유지류
HS코드	4자리	4자리	6자리	6자리(예외有)	2자리

- 근거 및 FAQ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
 - 인센티브 관련 FAQ 별지 참조

FAQ 울산항 액체화물 신규화주 인센티브

Q-1

‘과거 2년간 울산항 이용 실적’이 없는 화주와 ‘신규 화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과거 2년’의 기준 시점은 해당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예정)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에서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통계시스템(Port-MIS) ‘통합화물신고 정보’를 통해 과거 울산항 이용 여부를 조사하며, 인센티브 수혜를 희망하는 화주는 필요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에서 발급하는 과거 2년 수입실적증명서(울산항限) 제출이 가능합니다.

A

‘신규 화주’의 경우 1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1) 울산항 이용 이력이 전무한 신규 화주가 수입하는 경우
- 2) 기존 울산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입한 화주가 과거 2년간 취급 이력이 없는 신규 화종을 수입하는 경우

이 중 2)에 해당하는 화주의 경우, 신규 화종 여부는 아래와 같이 품목별 HS 코드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품목	원유, 석유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류	화학공업생산물	동식물성유지류
HS코드	4자리	4자리	6자리	6자리	2자리

ex) 기존에 메탄올(2905.11)을 수입하던 화주가 에틸렌글리콜(2905.31)을 신규 수입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혜 가능(화학공업생산물 : 6자리 변경)

단, 화학공업생산물의 경우 종류가 수만 종에 달하므로 6자리가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분류체계에 따라 신규 화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필요시 10자리까지 확인한 뒤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 2931.00 ~ 2931.90의 경우, ‘그 밖의 유-무기화합물’로 신고됨에 따라 단일화종 간주 또는 세부화종(10단위) 확인 실시

Q-2

신규 액체화물의 수출과 환적을 제외하고 수입화물만 감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 인센티브 제도는 외국항만에서 울산항으로 액체화물 수입 후 상업용 탱크터미널에 보관·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동북아 환적 허브 지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항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 및 액체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울산항으로 수입된 이후 가공·블렌딩 후 재수출되었거나 환적 되는 경우에는 이력 관리 및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에만 한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Q-3

해당 화주가 기존 취급화물과 신규 화물을 1척의 선박에 동시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울산항에 입항(예정)하는 선박 내 신규 화물과 기존 취급화물(또는 통과화물)이 혼재된 경우에는, 선박료는 감면이 불가능하며 해당 신규화물에 해당하는 화물료만 감면됩니다.

본 인센티브는 '신규 수입하는 액체화물'에 한정하여 산출되는 선박료, 화물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기준* 상 선박료는 해당 선박의 총 톤수(Gross Tonnage)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위와 같이 동일 선박 내 적재화물이 혼재된 경우에는 행정 상 분리가 불가능하여 화물료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Q-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항목 중 '선박료'의 경우, 용선계약에 따라 화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자사선의 경우 선박 등록증서상 소유주의 이름과 화주(선하증권상 명기된 화주명)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

정기용선(Time Charter)할 경우 용선계약서상 아래 조항의 내용(예시)을 확인하게 됩니다.

〈Shelltime 4(탱커선 주요 정기용선계약서 양식)〉 중에서

Charterers to 7. (a) Charterers shall provide and pay for all fuel(except fuel used for domestic services), towage Provide and pilotage and shall pay agency fees, port charges, commissions, expenses of loading and unloading cargoe

☞ 항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항만시설사용료, 도선료, 예선료 등) 일체를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A

선박의 운항·항해 지시권을 가지지 않고 항해용선(Voyage Charter)을 통해 울산항으로 해상운송을 하게 될 경우 아래 조항의 내용(예시)을 확인하게 됩니다.

〈Asbatankvoy(탱커선 주요 항해용선계약서 양식)〉 중에서

12. DUES - TAXES - WHARFAGE. The Charterer shall pay all taxes, dues and other charges on the cargo. The Owner shall pay all dues and other charges on the Vessel (whether or not such dues or charges are assessed on the basis of quantity of carg)

☞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화물료)를 항해용선자가 부담하고, 선박에 대한 모든 비용(정박료, 선박입출항료, 접안료)을 부담한다는 내용

Q-5

‘최저물량 충족여부’ 확인 기준과, ‘M/T의 유사 단위 또는 환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통합화물신고 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중량톤’을 기준으로 최저물량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선하증권(B/L) 또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증빙 서류와 상호검증을 실시합니다.

ex) * Port-MIS 확인 예시

선명	화물명	중량톤	수량
1	AFU000	400.000	0.000
2	AFU000	400.000	0.000
3	AFU000	100.000	0.000
4	AFU000	500.000	0.000
5	AFU000	100.000	0.000
6	AFU000	100.000	0.000
7	AFU000	100.000	0.000

ex) * 선하증권(B/L) 확인 예시

TANKER BILL OF LADING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by (Consignor)

on board the tanker _____ at the port of _____

Where of _____ In the Master, to be delivered to the port of **ULSAN, SOUTH KOREA**

Consignee _____

Notify _____

A quantity in bulk said by the shipper to be:

COMMODITY

QUANTITY
31,612.439 METRIC TONS
31,113.152 LONG TONS
212,483.000 U.S. BARRELS AT 60 DEG F
33,770.365 KL AT 15 DEG C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CLEAN ON BOARD

ex) * 수입신고필증 확인 예시

A

Metric Ton이 아닌 유사 또는 환산이 필요한 단위를 사용하면서 위 증빙을 통해 중량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국제표준 또는 해상운송 시 일반적인 단위 환산 기준을 사용하여 판단합니다.

단, 화물별로 부피·밀도·비중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환산 기준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시 화주는 수입 화물의 중량톤 환산 결과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등을 공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량톤

- 영국톤 1 Long Ton(L/T) = 2,240 LBS = 1,016.05kg
- 미국톤 1 Short Ton(S/T) = 2,000 LBS = 907.18kg
- 미터톤 1 Metric Ton(M/T) 또는 Kilo Ton = 2,204 LBS = 1,000kg

용적톤

- 1 CBM = 1m³ = 약 0.883 Measurement Ton = 35.305CUFT
- 1 Measurement Ton = 40ft³ = 1.133m³
- 1 US barrel = 41.976939 US gal = 158.9873 ℓ = 0.1589 CBM
- (유류) 1 US gal = 3.7854 ℓ

용적톤



중량톤 환산(해상운송 시 중량-용적 분기점 계산기준)

- 1 CBM = 1 Metric Ton

끝.

○ 울산항 방파제 액체화물 환적(T/S) 인센티브

전 세계 최초 방파제 내 T/S부두 운영 활성화 및
울산항 이용 고객의 액체화물 환적 이용 지원·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구분

세부사항

지급대상

- 선사

지급요건

- 울산항 방파제 T/S부두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선박과 선박 간 이송하는 외항선
 - 대상시설 : 남방파제 T/S부두(MBF-01~02), 북방파제T/S부두(MBF-03~04)

인센티브 유형

- 유형 :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형 – 즉시 감면
 - 울산항만공사 소관 : 정박료, 접안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 항로표지사용료

지급항목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게 부과하는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 항만시설 사용목적이 ‘양하’ 또는 ‘적하’ 또는 ‘양적하’에 한정

제출서류

- UPA에서 적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절 차

①

방파제 T/S부두 액체화물 환적 실시

선사

연중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

선사

연중

➡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UPA

연중

➡

④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처리

UPA

연중

시행기간

- UPA에서 인센티브 운영 종료 시까지

담당부서

- (인센티브 제도)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12
- (항만시설사용료) 울산항만공사 물류영업부 052-228-5402(외항선입출항)

기타사항

- 근거
 -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2